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0 선고 2021가단5017900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이지윤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건희

변 론 종 결 2021. 9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D는 2017. 8. 5. 사망하였는데,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E, 자녀들인 원고들, F, G이 있다.

이후 망 E은 2019. 5. 23. 사망하였다.

나. 피고는 망 D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H 주식회사, 주식회사 I와 그 소유 빌딩의 임대사업에 관한 세무 및 회계 사항을 처리하여 왔다.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망 E은 망 D가 사망한 이후인 2017. 8. 중순경 피고에게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업무 등의 처리를 위임(이하 '이 사건 위임계약'이라 한다)하였고,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80,000,000원으로 정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8. 2. 28. F를 대리하여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표진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,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11. 26. F에게 증여재산가산액 신고누락을 이유로 대상금액을 일부 증액한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5, 갑 제4 내지 6호증, 을 제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

피고는 망 E과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,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각 상속지분인 1/4에 해당하는 금액인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가사 피고와 망 E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수료

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망 E의 공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,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망 E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.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거나 망 E이 공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

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수료를 1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, 이는 피고 스스로 나머지 80,000,000원의 수수료는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수를 약정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80,000,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인 1/4에 해당하는 금액인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갑 제6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중 20,000,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윤희